

<b>보도 일시</b> (인터넷) 2022. 12.27.(화) 06:00 (지 면) 2022. 12.27.(화) 석간	<b>배포 일시</b> 2022.12. 26.(월) 15:30
<b>담당 부서</b>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정책과	<b>책임자</b> 과 장 최보영 (044-203-6688)
	<b>담당자</b> 사무관 한현주 (044-203-6943)
	<b>담당자</b> 교육연구사 전구슬 (044-203-6487)

##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

### - ‘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’ 발표 -

#### 주요 내용

-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여 수업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
-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 즉시 분리하고, 피해교원 법률지원 확대
- 침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고, 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
-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사회적 협력 확대로 대국민 인식 제고

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)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‘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’을 12월 27일(화) 발표한다.

○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\*가 지속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·복잡화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고,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.

\* [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] (2019)2,662건 → (2020)1,197건 → (2021)2,269건 → (2022.1학기)1,596건  
(2020년,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침해 심의 건수 일시 감소)

교육부는 이번 방안 마련을 위해 학생·학부모, 교원단체·노조,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, 지난 9월 30일(금) 시안 발표 이후에도 공청회를 통해 방안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.

※ 시안 발표 및 현장 간담회 개최(9.30.) → 공청회 개최(11.30.) → 최종안 발표(12.27.)

○ 또한,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도록 입법과정을 지원하였고,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12월 8일(목), 「초·중등교육법」이 개정되었다.

※ 「초·중등교육법」 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, 강득구의원 발의(2022.12.8. 국회 본회의 통과)  
 「교원지위법」 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(2021.7.5.), 이태규의원(2022.8.18.), 서정숙의원(2022.9.28.) 발의

## ‘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’ 주요 내용

□ ‘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’ 최종안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.

비전	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 구현
목표	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확대

### « 5대 추진 전략 및 15개 과제 »

① 수업 방해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.

- 교원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\*하고,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.

\* (현행) 학생 생활지도 관련 명시적 근거 없음 → (개선)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명시적으로 규정(12.8. 개정)

② 피해교원의 보호를 강화한다.

-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\*하고, 선도가 긴급할 경우 우선 조치하며,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을 확대한다.

\* (현행) 교사가 특별휴가로 우회적 회피 → (개선) 침해학생 즉시 분리, 분리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

③ 침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의 조치를 강화한다.

-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**특별교육을 의무화\***하고, 학부모도 참여하게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며, 조치사항 불이행 시 추가 징계할 수 있도록 하여 조치사항의 실행력을 높인다.

\* (현행) 다른 조치에 특별교육을 부가하거나 전학 조치 시 특별교육·심리치료 의무화  
→ (개선) 출석정지,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도 조치 전 특별교육 의무화(학부모 함께 참여)

- 또한, 시안 발표 당시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추진하기로 했던, **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 작성**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에 한해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는 것으로 확정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강화한다.

\* (현행)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근거 없음  
→ (개선)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학생 조치사항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에 작성

④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.

-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**교권보호위원회\***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하여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하고, 교원치유지원 센터를 '(가칭)교육활동보호센터'로 확대 개편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교원의 치유 기능을 확대한다.

\* (현행) 학교/시도 교권보호위원회 → (개선) 학교/지원청/시도 교권보호위원회 병행 설치 운영

⑤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을 확대한다.

- 정부와 민간·교육주체가 함께 **협의체\***를 구성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 협약을 체결하고, 학부모·시민단체 등과 협업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인식을 높인다.

\* (역할) ①교육공동체 협약식 체결, ②학생-교사의 권리 간 조화 방안, ③아동학대 예방과 교육활동 보호 개선 과제 발굴·추진, ④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

□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이번 방안 마련으로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환기하여, 현장의 선생님들이 교실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.”라고 밝히면서,

- “방안에 포함된 추진 내용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.”라고 강조하였다.

- 【붙임】** 1. 교육활동 침해 현황  
2.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  
3. 학생 생활지도, 교육활동 보호 관련 개정법률안  
4. 강화 방안 적용 전(AS-IS)-후(TO-BE) 비교

**【별첨】**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

**교육활동 침해 현황 (최근 3년간)**

(교육부-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 실태조사 결과)

연도별 침해 현황

(단위: 건)

구분	2019	2020	2021	2022.1학기
침해 심의 건수	2,662	1,197	2,269	1,596

학교급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

(단위: 건)

학년도	초			중			고			기타			합계		
	학생	학부모 등	계	학생	학부모 등	계	학생	학부모 등	계	학생	학부모 등	계	학생	학부모 등	계
2019	185	102	287	1,394	77	1,471	856	48	904	-	-	-	2,435	227	2,662
2020	50	44	94	488	36	524	543	36	579	-	-	-	1,081	116	1,197
2021	149	67	216	1,158	64	1,222	767	36	803	24	4	28	2,098	171	2,269

학년도	유			초			중			고			특수			합계		
	학생	학부모 등	계	학생	학부모 등	계	학생	학부모 등	계	학생	학부모 등	계	학생	학부모 등	계	학생	학부모 등	계
2022 (1학기)	0	3	3	103	49	152	877	42	919	480	24	504	15	3	18	1,475	121	1,596

※ 2021학년도부터 기타(특수학교 포함) 추가 / 2022년부터 유치원 추가하여 조사

침해유형 및 침해 대상별 현황

(단위: 건)

학년도	침해 대상	상해 폭행	모욕 명예훼손	성적 굴욕감 오감 경험 일으키는 행위	공무 및 업무 방해	협박	손괴	성폭력 범죄	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	정당한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부당한 간섭	기타	합계
2019	학생	240 (9.9%)	1,345 (55.2%)	205 (8.4%)	126 (5.2%)	82 (3.4%)	14 (0.6%)	24 (1.0%)	28 (1.1%)	238 (9.8%)	133 (5.5%)	<b>2,435 (100%)</b>
	학부모 등	8 (3.5%)	112 (49.3%)	1 (0.4%)	16 (7.0%)	21 (9.3%)	1 (0.4%)	0 (0.0%)	6 (2.6%)	42 (18.5%)	20 (8.8%)	<b>227 (100%)</b>
2020	학생	106 (9.8%)	622 (57.5%)	107 (9.9%)	69 (6.4%)	38 (3.5%)	12 (1.1%)	30 (2.8%)	23 (2.1%)	34 (3.1%)	40 (3.7%)	<b>1,081 (100%)</b>
	학부모 등	7 (6.0%)	46 (39.7%)	3 (2.6%)	6 (5.2%)	10 (8.6%)	0 (0.0%)	1 (0.9%)	4 (3.4%)	33 (28.4%)	6 (5.2%)	<b>116 (100%)</b>
2021	학생	231 (11.0%)	1,203 (57.3%)	200 (9.5%)	80 (3.8%)	60 (2.9%)	19 (0.9%)	65 (3.1%)	67 (3.2%)	93 (4.4%)	80 (3.8%)	<b>2,098 (100%)</b>
	학부모 등	8 (4.7%)	68 (39.8%)	7 (4.1%)	15 (8.8%)	19 (11.1%)	3 (1.8%)	1 (0.6%)	3 (1.8%)	29 (17.0%)	18 (10.5%)	<b>171 (100%)</b>
2022 (1학기)	학생	167 (11.3%)	835 (56.6%)	123 (8.3%)	69 (4.7%)	70 (4.7%)	11 (0.7%)	41 (2.8%)	35 (2.4%)	58 (3.9%)	66 (4.5%)	<b>1,475 (100%)</b>
	학부모 등	10 (8.3%)	42 (34.7%)	2 (1.7%)	16 (13.2%)	12 (9.9%)	0 (0.0%)	1 (0.8%)	3 (2.5%)	28 (23.1%)	7 (5.8%)	<b>121 (100%)</b>

**□ 교사에게 톱을 던지면서 협박**

- ▶ 수원시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 복도에서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였고, 이를 발견한 교사가 학생 지도를 위해 학년연구실에 데려가자 교사 3명에게 욕설을 하고 실습용 톱을 던지면서 위협함('22.6월)

**□ 교단 위에 누워 수업 방해**

- ▶ 충남 중학교 학생이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교단 위에서 수업 중인 선생님 옆에 누운 채 휴대전화를 충전하면서 조작하는 영상이 촬영되었고, 해당 영상이 무단으로 온라인에 유포됨('22.8월)

**□ 휴대전화로 교사 불법 촬영**

- ▶ 광주시 고등학교 학생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할 목적으로 교탁 아래에 휴대전화를 놓아 몰래 촬영하였고, 학생 휴대전화에서 수차례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이 발견됨('22.9월)

**□ 학부모에 의한 모욕·명예훼손**

- ▶ 인천 초등학교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, 욕설 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('21.11월)
- ▶ 경남 고등학교 학부모가 전화, 메시지, 학교 방문 등을 통해 자녀 교육 관련하여 부당하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('21.9월)

□ 「초·중등교육법」 개정안 ('22.12.8. 국회 본회의 통과)

○ 이태규·강득구의원 개정법률안 병합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제18조(학생의 징계)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. 다만,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.</li> <li>※ [개정 전]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. 다만,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.</li> </ul>	일부 수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제18조의4(학생의 인권보장 등)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li> </ul>	신설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제20조의2(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)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.</li> </ul>	신설

□ 「교원지위법」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

○ 이태규의원 개정법률안 ('22.8.18. 발의)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생활지도 방안에 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</li> <li>▶ 교육활동 침해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지체 없이 분리</li> <li>▶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</li> <li>▶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 조정</li> </ul>
---

○ 강득구의원 개정법률안 ('21.7.5. 발의)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</li> <li>▶ 침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한 경우 학교봉사, 특별교육·심리치료, 출석정지의 우선 조치 근거 마련</li> <li>▶ 침해학생이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거부시 징계 조치</li> <li>▶ 교육활동 침해 주체를 학생과 보호자로 명확화</li> <li>▶ 교육활동 침해 관련 비밀 및 자료를 누설할 수 없는 근거 마련</li> </ul>
--

○ 서정숙의원 개정법률안 ('22.9.28. 발의)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</li> <li>▶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·심리치료 조치를 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함</li> <li>▶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징계 조치</li> </ul>
---

## 붙임4

## 강화 방안 적용 전(AS-IS)-후(TO-BE) 비교

구분	AS - IS	TO - BE
<b>수업 방해행위 적극 대응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학생 '생활지도'에 관한 명시적 근거 없음</li> <li>■ 수업방해 행위 관련 교육활동 침해 유형 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여 적극적인 학생 생활지도 수행</li> <li>■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(고시 개정)</li> </ul>
<b>피해교원 보호 중심의 보호 강화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침해 행위 발생시 교사가 조퇴, 특별휴가로 우회적으로 회피</li> <li>■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상이하고 불충분</li> <li>■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교권 보호위원회 개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시 침해 학생 즉시 분리 및 우선 조치</li> <li>■ 시도별 편차없이 충분한 교원 피해비용 보상·법률 지원</li> <li>■ 피해교원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 가능</li> </ul>
<b>침해학생 및 보호자 조치 강화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전학 조치시 특별교육·심리치료 의무화</li> <li>■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시 징계 근거 없음</li> <li>■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 작성 근거 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출석정지, 학급교체 조치 학생도 특별교육·심리치료 의무화</li> <li>■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시 학교장의 추가적인 징계 조치</li> <li>■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에 작성</li> </ul>
<b>지원체계 고도화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교육활동 보호 전담 지원기구 부재</li> <li>■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피해교원 심리적 회복 지원에 중점</li> <li>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미설치</li> <li>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및 교원의 전문성 제고 지원 부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전담 지원기구 설치로 연구정책 수행 및 시도 교육활동보호센터 지원</li> <li>■ (가칭)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·개편하여 침해 예방에 중점</li> <li>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추가 설치 (학교/교육지원청/교육청 병행 운영)</li> <li>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전문성 제고 및 교원의 대응 역량 강화 지원 확대</li> </ul>
<b>사회적 협력 확대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범사회적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분위기 조성 기반 부족</li> <li>■ 교육활동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·캠페인 부족</li> <li>■ 학부모지원센터, 시민단체와 유기적 협업 부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정부-민간-교육주체 협의체 구성으로 개선 과제 발굴 및 문화조성</li> <li>■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·캠페인 추진</li> <li>■ 학부모지원센터, 시민단체와 지속 가능한 협업 추진</li> </ul>